

시의회 보고

<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>

2019. 8. 29.

평생교육국

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

□ 개정사유

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및 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의 지원대상을 '서울시 소재 비인가대안 교육기관 소속의 학교밖 청소년'까지 확대, 개정(2019.5.16.) 함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조례와 일치하여 운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정관 제1조(목적)
 -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
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 ·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<u>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</u>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정관 제5조(법인 공여이익 수혜자) 제2항 및 제2항 제5호
 - 법인의 수혜자 확대
 - ② 이 법인의 수혜자는 서울특별시(이하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.

1~4호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<u>학생 및 시 소재</u>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

혂 했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 립·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.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 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
- ① (생략)
- ② 이 법인의 수혜자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·도에 소재 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자 로 한다.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.

1~4호 (생략)

5.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
개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 립·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.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 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 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이 법인의 수혜자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 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 이면서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다만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 다.

1~4호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 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

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정관

제정 2008. 12. 08 개정 2009. 12. 10 개정 2010. 5. 6 개정 2010. 12. 16 개정 2011. 4. 8 개정 2012. 3. 6 개정 2012. 4.10 개정 2012. 10. 2 개정 2013. 4. 5 개정 2014. 4.30 개정 2015. 3.24 개정 2016. 7.27 개정 2016. 10. 20 개정 2017. 10. 23 개정 2018. 12. 26 개정 2019. **. **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·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10.20.><개정 2019.**.**.>
-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"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" 이라 하며, 영문은 "Seoul Scholarship Foundation(약칭 "SSF")" 으로 표기한다.
- 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둔다.<개정 2010.5.6><개정 2012.4.10>
- 제4조(사업) ①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사업을 행 한다.

-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이 법인이 제4조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이 법인의 수혜자는 서울특별시(이하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서울시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·도에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2><개정 2016.10.20><개정 2019.**.**.>
 - 1.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<개정 2016.10.20>
 - 2. 예·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<개정 2009.12.10><개정 2016.10.20>
 - 3.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<신설 2009.12.10><개정 2016.10.20>
 - 4.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<개정 2016.10.20>
 - 5.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<신설 2012.10.2><개정 2016.10.20> <개정 2019.**.**.>

제2장 재산 및 회계

- 제6조(재산의 조성)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-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 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- 1. 국가·시·자치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-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- 3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- ③매 회계연도의 세계(歲計)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목적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,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.
 - ④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-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-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<개정2010.12.16> <개정2011.4.8.><개정2012.3.6><개정2013.4.5><개정2014.4.30><개정2015.3.24><개정2015.7.27>

- 제7조(재산의 관리) ①제6조 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-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8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- 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,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- 제10조(회계의 구분)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-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-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- 제11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12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"장기차입금"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.
- 제14조(임원 등의 보수 제한) 정수 범위 내에서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 (임원과 직원)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,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.
- 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- 1. 이 법인의 설립자
 - 2. 이 법인의 임원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

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
-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제16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 - 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-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-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·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<개정 2012.10.2>
 - 1.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- 2.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- 3. 당해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
 - 4.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3호의 예산·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증명서.

제3장 임 원

제1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 11명<개정 2010.5.6>
- 2. 감사 2명
-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, 시,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시 교육청" 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은 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0.5.6.>
- ③제1항의 이사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<신설 2018.12.26>
- 제18조(상근이사)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이사 1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- **제19조(임원의 임기와 해임)**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26>
 -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8.12.26>
 -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- ④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 한다.

- ⑤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.)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 및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<개정 2017.10.23>
 - ②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 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.
 - ③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시 평생교육국장<개정 2010.12.16><개정 2012.3.6.><개정 2015.3.24.><개정 2017.10.23>
 - 2.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<개정 2013.4.5>
 - 3. <삭제><2010.5.6>
 - ④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⑤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 - ⑥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,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.
 - ⑦제3항의 이사는 법률·조례 또는 시 직제의 개·폐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책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.
- 제21조(임원 선임의 제한)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-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 야 한다.
- 제22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시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2.26>
- 제23조(명예 이사장) 시장은 당연직 명예 이사장이 된다.
- 제2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.
 -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- **제25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**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0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기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6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- 1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- 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- 3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4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
- 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6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
- 7.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,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(留止)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
제4장 이사회

- 제27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 - 1. 이 법인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-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- 5. 사업에 관한 사항
 -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-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8조(의결 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-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- 제29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30조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.
- 제31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안건인 경우 적어도 7일전, 예산 및 주요사업계획안건일 경우 적어도 15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<개정 2016.7.27>

-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제32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 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 -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2인 이상 과 감사 2인의 기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3. 6>
- 제34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5장 사무국

- 제35조(사무국) ①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.
 - ②사무국에는 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단사무국장은 시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.<개정 2010.12.16>
 - ③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0.12.16>
- 제36조(사무국의 조직 등) 사무국의 조직, 정원,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**제37조(공무원의 파견요청)**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- 제38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정관변경사유서 1부
 - 2.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
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- 4.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제39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40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 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된다.
- 제41조(시행규정) ①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 - ②직제·정원규정, 보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2조(공고) 재단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나,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- 제4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08년 12월 8일)부터 시행한다.
- **제2조(경과규정)** 하이서울장학생 및 인문과학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존의 규정과 시행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09년 12월 10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0년 5월 6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0년 12월 16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1년 4월 8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2년 3월 6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2년 4월 10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2년 10월 2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3년 4월 5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4년 4월 30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5년 3월 24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6년 7월 27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6년 10월 20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7년 10월 23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8년 12월 26일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개정 후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9.**.**.)부터 시행한다.